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7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최유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석, 박중화, 신동원,
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
윤종복, 이봉준, 이종환,
채수지, 최민규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도농 간 상생을 도모하고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「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운영해왔으나, 자치구-산지 1: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, 어린이집-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관리 편차 등 해결을 위하여 '24. 1월,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「서울든든급식」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였음.
- 현재 공공급식 개편에 따른 추진 근거가 「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됨에 따라, 본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(재정지출) 조·항 삭제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
 - (재정수입) 각종 자료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「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¹⁾은 없으므로 동 폐지안에 수반되는 재정수입 순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세입감소 영향 검토 필요성] 통상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으나,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어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